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10219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청구의 소
원 고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0. 12. 10.
판 결 선 고 2021. 2. 1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180,740원과 그 중 30,614,850원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0. 4. 14.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9. 7.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2019. 7. 11. 접수 제563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9,75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8. 3.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기간은 2020. 3. 27.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피고가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4. 1. C은행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 8. 30. 이자연체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라. 원고는 2020. 3. 16. C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0,614,850원(= 원금 29,750,000원 + 이자 864,8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해 대지급금 596,6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30,710원을 변제받아 대지급금 565,890원이 남아 있다.

마.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바. 한편 피고 A은 2019. 7. 11.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 7. 11. 접수 제56376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1,180,740원(= 대위변제금 30,614,850원 + 대지급금 565,89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0,614,8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4. 1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

생하지 않았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2016. 4. 1.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9. 7. 11.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9. 8. 30. 피고 A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C은행에 위 피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존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북대전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회신,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9. 7. 1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18,500,000원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 2019. 7. 11.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은 합계 184,046,883원[= C은행(원고의 보증원금 포함) 35,000,000원 + D은행(근저당권자) 82,513,366원 + E(근저당권자) 18,000,000원 + 미납 부가가치세 1,242,000원 + F 주식회사 7,291,517원 + 피고 B(수익자) 4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3) 채무초과 상태였던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은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B가 피고 A에게 대여해 준 사업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B는 피고 A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 A의 사업악화로 사업장이 폐업에 이르게 되자 피고 B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의 재산상태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G에 있는

H아파트 I동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J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K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59.292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전광역시 유성구 G 대 77369.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77369.8분의 34.7532

-- 이 상 --